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2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2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35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38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4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 년 2 월 26일

회 사 명 : (주)광주신세계
대 표 이 사 : 유신열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광천동)
(전 화) 062-360-1234
(홈페이지)<http://www.gjshinseg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담당 (성 명) 김종석
(전 화) 062-360-107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제 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4년 3월 14일(금) 오전 9시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무진대로 932(광천동)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다목적홀

3.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19기(2013.01.01~201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 사 홈페이지 및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실질주주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 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하동수 (출석률: 86%)	김상월 (출석률: 100%)	유충흔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13.01.18	[의결사항] - 광주은행 당좌차월 약정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12년 업무 실적 보고 - 2012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찬성 - -	찬성 - -	찬성 - -
2	2013.01.30	[의결사항] - 2012 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012 사업년도 현금배당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12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보고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3	2013.02.22	[의결사항]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보고 - 2013년 1월 경영실적 보고	찬성 - -	찬성 - -	찬성 - -
4	2013.03.15	[의결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내부회계 관리 책임자 변경의 건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 2013년 2월 경영실적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5	2013.04.05	[의결사항] - 백화점 임대차 재계약의 건 (물건: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터미널 내 백화점 판매시설 및 부지)	찬성	찬성	찬성
6	2013.04.29	[의결사항]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13.05.24	[의결사항] - 여신한도 신규 설정 건 -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설정 건 [보고사항] - 2013년 4월 경영실적 보고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13.06.21	[보고사항] - 2013년 5월 경영실적 보고	-	-	-
9	2013.07.19	[보고사항] - 201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10	2013.08.16	[보고사항] - 2013년 7월 경영실적 보고	-	-	-
11	2013.09.27	[보고사항] - 2013년 8월 경영실적 보고	-	-	-
12	2013.10.18	[보고사항] - 2013년 9월 경영실적 보고	-	-	-
13	2013.11.23	[보고사항] - 2013년 10월 경영실적 보고	불참	-	-
14	2013.12.20	[보고사항] - 2013년 11월 경영실적 보고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하동수 사외이사 김상철 사외이사 유충훈	2013.01.30	- 2012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보고	보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하동수 사외이사 김상철 사외이사 유충훈	2013.02.22	- 제18기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 보고서 승인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하동수 사외이사 유충훈	2013.03.15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1,000,000,000	129,944,610	43,314,87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백화점 부문]

(1) 산업의 특성

커다란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백화점은 고품격의 매장 인테리어, 최첨단 편의시설, 소비재에서 고급의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산업으로서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세련된 판매시설을 통하여 제공하며 첨단 유행을 선도하고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유통산업입니다.

이러한 백화점은 지난 60년대 경제발전기부터 한국 유통산업의 중심에서 낙후된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시장 재편과 아울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로 업체간 가격 경쟁, 입지 경쟁, 서비스 경쟁 등 전반적 경쟁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0년대에 접어들며 대형마트 등 신유통업체의 출점 가속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로 지방백화점을 시작으로 중·소형백화점의 시장이탈과 더불어 대형백화점위주의 시장재편을 거치면서 내수경기 부진과 업체간 경쟁 심화로 수년간 저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양극화 추세와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대형마트, 홈쇼핑 등 이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백화점만의 특색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2013년 백화점 업계는 29.8조의 매출로 전년동기대비 2.5%대의 신장율을 달성하였습니다.

※ 백화점 매출현황(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매출액(조원)	29.8	29.1	27.6	24.8
신장율(%)	2.5	5.5	11.4	13.6

- 자료출처 : 통계청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생활 내구재로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주력상품은 단연 의류 및 잡화를 중심으로 하는 패션상품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유통업체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명절, 기념일 등의 GIFT 시즌이 포함된 봄, 가을, 겨울의 판매액이 여름철의 판매액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4) 경쟁요소

현재의 유통산업은 전업태간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업태별 차별적 경쟁요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신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이업태의 출현은 대형 백화점을 위주로 하는 시장재편으로 중·소형 백화점의 시장이탈 및 M&A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백화점은 시설 및 상품 고급화, 고품격 서비스력 쇄신, 보다 세분화된 CRM활동, 첨단 과학적 마케팅 기법의 도입, 매장 인테리어 고급화 및 편의시설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잡화 등 백화점의 주력 상품인 패션류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회복 국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1년 7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 재래시장 특별법 :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 시장과의 협력 요청가능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유발비용 원인자(개발자)에게 부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이상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 건축 제한 (시행일 2007.1.1.)
- 유통산업 발전법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공정화,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을 지정

-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기반 유통업체
소상인 보호조례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꺾고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정

[대형마트 부문]

(1) 산업의 특성

대형 마트는 상품의 대량 구매·대량 진열, 상품의 저마진 고회전, 셀프 서비스의 특성을 지닌 유통 형태로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속구매를 지향하는 소비 패턴과 대형 마트의 지속적인 출점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마트는 다품목으로 농수산물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로 매입단가를 낮춤으로써,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합리적 소비를 도모,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특산물을 발굴하여 전국적인 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93년 국내에 대형 마트가 최초로 선을 보이기 시작하여 저가 정책과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정착화 되면서 대형 마트는 꾸준한 신장을 하며 2003년 할인점이 백화점 매출을 추월하여 국내 최대의 소매업태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속도 둔화 및 지속적인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인하여 향후,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성이 성숙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행중이며 신규수요창출 및 효율적 경영 및 업태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산업 발전법 관련 의무 휴업일 지정 영향으로 매출 신장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대형마트 업계 매출은 총 4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는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매출현황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매출액(조원)	45.1	44.4	42.3	38.2
신장율(%)	1.6	5.0	10.7	7.7

- 자료출처 : 통계청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 마트의 상품 구성은 농수산물, 공산품 등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문화로 경기 탄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여름휴가 및 추석 등이 있는 3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대형 마트의 중요한 경쟁 요소는 출점 입지의 선점 및 다점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구조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쟁 요소와 함께 더불어 엔터테인먼트(오락)를 즐길 수 있는 고객 편의 시설 및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 등의 고객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비가격적 부분이 주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백화점 부문과 동일의 추가 규제

- 유통산업 발전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3.4% 감소한 2,066억원, 총매출액은 △3.2% 감소한 4,532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8% 감소한 56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확산 및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소폭 역신장 하였으나, 지속적인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시너지 효과와 E-Mart의 수익력 개선으로 수익중시경영을 지속하여 비용절감및 상품 기획 차별화와 현장 영업력을 극대화해 경쟁업체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백화점 부문]

백화점 부문은 2013년 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1,241억원,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2.3% 3,55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 감소한 50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부문]

E-Mart는 2013년 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825억원, 총매출액은△6.3% 감소한 97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5% 감소한 5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광주지역에는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장법인으로서 실적 공시를 통해 당사의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을 매 기간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롯데 광주점 등 경쟁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비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의 지점으로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부재합니다. 이에 시장점유율은 부득이하게 통계청에서 제시된 광주광역시 백화점 판매액과 대형마트 판매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문]

백화점 부문은 광주지역에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 인접지역 유스퀘어 문화관 오픈등 기존 당사의 복합쇼핑타운과의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면서 당사 M/S의 상승추세가 이어졌고, 2012년 이후 롯데 수완아울렛 증축 오픈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으나 2013년에는 신장하였습니다.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광주신세계	40.4%	39.0%	39.6%	39.3%	38.0%
기 타	59.6	61.0%	60.4%	60.7%	6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대형마트 부문]

이마트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사는 생필품 위주의 대형마트의 특성상 지리적인 여건(근거리)에 따라 매출 영향력이 높으며 당사의 경우백화점과 이마트의 연계로 복합쇼핑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형마트 영업규제, 동업계간의 경쟁심화등의 영향 등으로 하락 하였습니다.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광주신세계 E-Mart	8.6%	9.2%	10.8%	11.0%	10.8%
기 타	91.4%	90.8%	89.2%	89.0%	8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3) 시장의 특성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의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에 있는 바 최근 대단위 택지 개발로 광산구 지역의 신흥 주거단지 확대, 광주시청 이전(동구→서구), 광산구↔광천동간 광로 개통, 송원대학 부지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당사 상권 내 유입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미널 유스퀘어에 문화시설 및 영화관이 신규로 들어서면서 집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2007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출점시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심의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예견됩니다.

[백화점 부문]

광주지역 도·소매 유통시장은 대형 백화점 (신세계, 롯데, NC)를 중심으로 아울렛등의 이업태와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지속된 소득의 양극화로 백화점은 고급품, 패션 장르를 강화, 다양한 문화마케팅 전략, 고객의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마케팅의 강화 및 집중을 통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을 확보하는데 힘쓰는 한편, 격조 높은 매장 분위기 연출을 통해 고품격 백화점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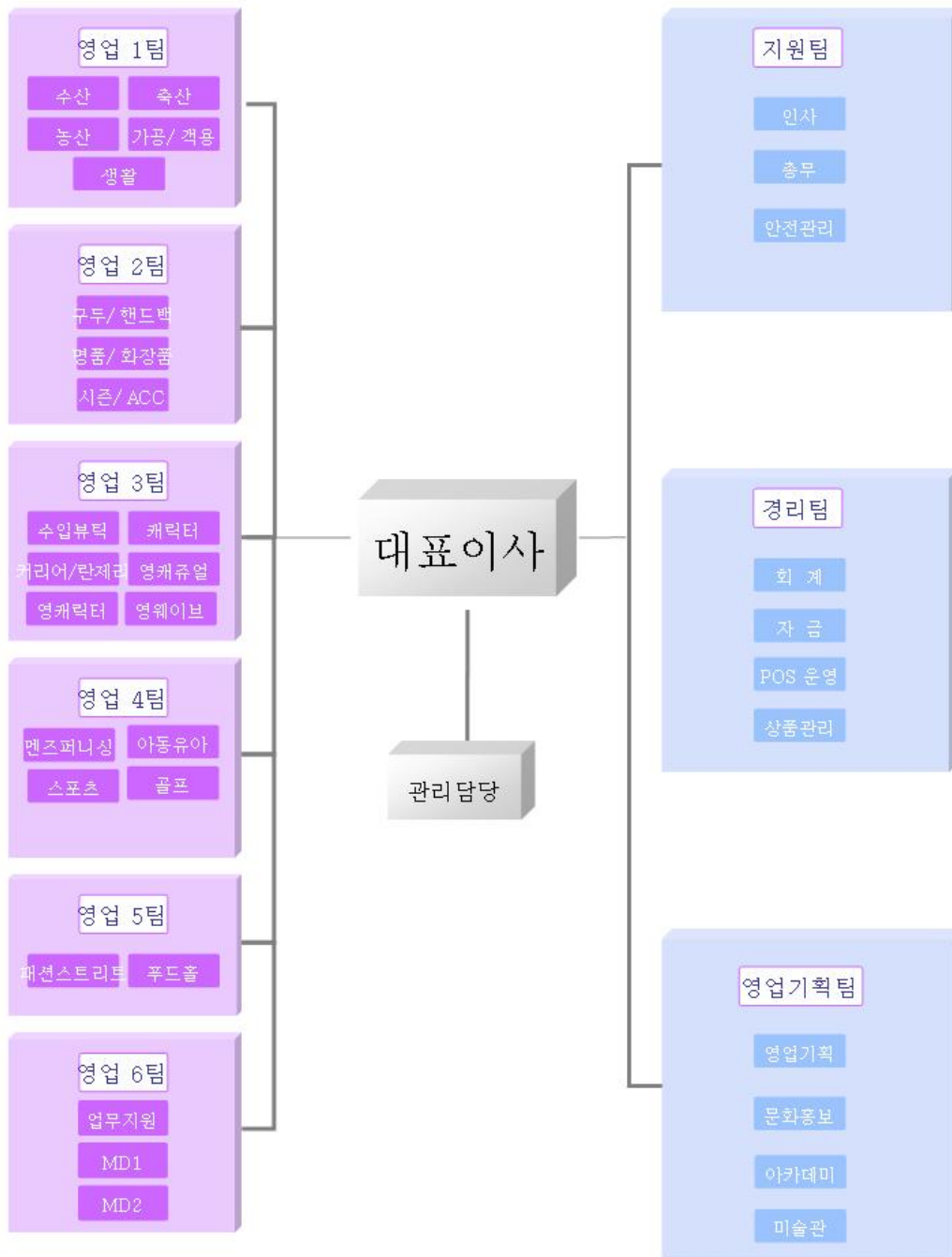
[대형마트 부문]

대형마트는 현재 이마트 5개, 롯데마트 4개, 홈플러스 3개 점포와 지방 대형마트가 다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형 마트는 신흥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주거 단지 위주로 각 점포가 진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형 마트 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집객 효과는 감소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 구색과 서비스의 차별화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나. 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주식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 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2013. 12. 31 현재

제 18 기 201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9 (당) 기	제 18 (전) 기
자산		
유동자산	25,873,334,257	287,723,500,777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29,567,282	43,563,398,441
단기금융예치금	-	226,0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6,267,858,883	12,352,631,273
재고자산	4,415,826,464	4,638,112,541
기타유동자산	11,160,081,628	1,169,358,522
비유동자산	630,482,473,729	142,939,467,311
장기금융예치금	8,500,000	2,500,000
유형자산	113,548,428,534	118,344,439,017
무형자산	772,782,685	599,587,220
기타비유동채권	316,657,200,396	22,151,316,511
이연법인세자산	728,839,022	-
기타비유동자산	198,766,723,092	1,841,624,563
자산총계	656,355,807,986	430,662,968,088
부채		
유동부채	145,034,010,472	65,950,253,747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06,120,361,211	24,854,829,458
미지급법인세	7,978,191,535	8,345,387,859
기타유동부채	30,935,457,726	32,750,036,430
비유동부채	102,630,971,310	3,096,870,972
사채	99,851,184,895	-
기타비유동채무	2,410,809,200	2,974,165,650
확정급여부채	368,977,215	14,527,466

이연법인세부채	-	108,177,856
부채총계	247,664,981,782	69,047,124,719
자본		
자본금	8,000,000,000	8,000,000,000
기타자본	13,384,146,000	13,375,628,000
이익잉여금	387,306,680,204	340,240,215,369
자본총계	408,690,826,204	361,615,843,369
부채와자본총계	656,355,807,986	430,662,968,088

②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9 (당) 기	제 18 (전) 기
매출액	206,606,675,072	213,803,172,784
매출원가	(73,016,517,820)	(76,996,157,199)
매출총이익	133,590,157,252	136,807,015,585
판매비와관리비	(77,608,433,841)	(78,621,303,211)
영업이익	55,981,723,411	58,185,712,374
기타수익	700,818,349	542,219,392
기타비용	(695,601,914)	(494,903,008)
금융수익	11,925,321,030	11,898,053,881
금융비용	(4,284,104,83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3,628,156,041	70,131,082,639
법인세비용	(15,058,441,172)	(16,361,547,127)
당기순이익	48,569,714,869	53,769,535,512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505,267,966	(368,324,098)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보험수리적손익	496,749,966	(368,324,098)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파생상품평가이익	8,518,000	-
총포괄이익	49,074,982,835	53,401,211,414
주당이익	30,356	33,606
기본주당순이익	30,356	33,606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9 (당) 기	제 18 (전) 기
I.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49,194,954,237	53,528,489,402
1.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128,489,402	127,277,988
2. 보 험 수 리 적 손 익	496,749,966	(368,324,098)
3. 당 기 순 이 익	48,569,714,869	53,769,535,512
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49,000,000,000	53,400,000,000
1. 사 업 확 장 적 립 금	47,000,000,000	51,400,000,000
2. 배 당 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1,250원 (25%) 전기: 1,250원 (25%))	2,000,000,000	2,000,000,000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94,954,237	128,489,402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12.01.01 (기초자본)	8,000,000,000	13,375,628,000	288,839,003,955	310,214,631,955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53,769,535,512	53,769,535,512
기타포괄손익	-	-	-	-
보험수리적손실	-	-	(368,324,098)	(368,324,098)
총포괄손익 합계	-	-	53,401,211,414	53,401,211,41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 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2,000,000,000)	(2,000,000,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 의 거래 등 합계:	-	-	(2,000,000,000)	(2,000,000,000)
2012.12.31 (기말자본)	8,000,000,000	13,375,628,000	340,240,215,369	361,615,843,369
2013.01.01 (기초자본)	8,000,000,000	13,375,628,000	340,240,215,369	361,615,843,36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48,569,714,869	48,569,714,869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이익	-	-	496,749,966	496,749,966
파생상품평가이익	-	8,518,000	-	8,518,000
총포괄손익 합계	-	8,518,000	49,066,464,835	49,074,982,83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2,000,000,000)	(2,000,000,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2,000,000,000)	(2,000,000,000)
2013.12.31 (기말자본)	8,000,000,000	13,384,146,000	387,306,680,204	408,690,826,204

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9 (당) 기	제 18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337,481,347	56,319,962,705
(1) 당기순이익	48,569,714,869	53,769,535,512
(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0,494,438,384	9,818,076,741
퇴직급여	848,679,415	827,523,152
감가상각비	5,636,577,731	5,991,129,173
무형자산상각비	99,323,097	89,200,762
매출채권손상차손	-	10,760,893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15,845,632)	-
유형자산처분손실	35,973,808	24,839,882
유형자산처분이익	(12,253,652)	(34,751,978)
법인세비용	15,058,441,172	16,361,547,127
이자비용	4,284,104,835	-
이자수익	(11,908,619,660)	(11,898,053,88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594,463,180	(1,009,759,186)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85,689,933)	(215,061,778)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767,729,300	1,151,353,02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22,286,077	311,337,06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448,00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89,141,464)	(1,246,128,058)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533,824,964	1,565,751,22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814,578,704)	468,564,655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563,356,450)	81,698,000

퇴직금의 지급	(993,882,450)	(1,669,444,550)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543,397,200	970,309,520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453,005,550	(1,965,186,307)
(3) 이자의 수령	8,574,935,946	9,766,291,136
(4) 이자의 지급	(4,038,953,478)	-
(5) 법인세의 납부	(16,262,654,374)	(17,033,940,68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4,884,012,506)	(43,652,264,163)
보증금의 감소	27,210,000,000	470,030,000
단기금융예치금의 감소	296,300,000,000	220,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60,600,000	360,000,000
보증금의 증가	(527,175,000,000)	(405,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954,213,300)	(28,926,419,350)
무형자산의 취득	(119,399,206)	(150,874,813)
장기금융예치금의 취득	(6,000,000)	-
단기금융예치금의 취득	(70,300,000,000)	(235,0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012,700,000	(2,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108,900,000,000	-
사채의 발행	99,812,7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2,028,700,000,000)	-
배당금 지급	(2,000,000,000)	(2,0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감소)(I+II+III)	(39,533,831,159)	10,667,698,542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563,398,441	32,895,699,899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029,567,282	43,563,398,441

⑥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이하 "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 및대형마트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용진(지분율 52.1%)과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10.4%)입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

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4년 1월 2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3월 1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7: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3.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은 다음과 같으며, 회계정책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 체계를 제공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포함한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대체하고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주석 23 및 28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였고, 신규 공시사항과 관련된 비교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나 변경된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으로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손익 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서에 따라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비용(수익)을 보고기간 초에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중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 비용은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 자산인식상환의 효과에 대한 이자로 구성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 전 당사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장기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3)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의 집단으로 묶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표시된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주석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예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손상차손이 인식되고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에 기초하는 경우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상 일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항목의 표시 방법과 관련된 기준서 변경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의 표시 및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1)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당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금액은 이동평균법(원·부재료 및 저장품), 총평균법(대형마트의 매장상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백화점의 매장상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부채의 이자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 물	20~40년	정액법
구 축 물	20년	
인 테 리 어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시설이용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 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과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당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고객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물건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한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중 보상점수의 부여로 인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③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수수료수익

당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인 특정매입상품총매출액에서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총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과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4에서 기술한 대로, 당사에는 백화점 및 이마트의 2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단위들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0)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을 추가하여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4년 3월 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무제표 및, 주석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19기 (2013.1.1~2013.12.31)	제18기 (2012.1.1~2012.12.31)
주당 배당금(원)	1,250	1,250
배당금 총액(원)	2,000,000,000	2,000,000,000
시가 배당율	0.50%	0.56%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① (생략) ② 영문으로는 Gwangju Shinsegae. Co., Ltd. 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① (현행과 동일) ② 영문으로는 GWANGJU SHINSEGAE Inc.라 표기한다.	단순수정

<p>제9조(신주의 인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⑤ (신설)</p> <p>⑥ (신설)</p> <p>⑦ (신설)</p> <p>⑧ (신설)</p>	<p>제9조(신주의 인수)</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⑧ 회사는 제2항 마.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p>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반영</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 반영</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 반영</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 반영</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③항 반영</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④항 반영</p>
-----------------------------------------------------------------------------------------------------------------------------------------------------------------------------------------------------------------------------------------------------------------------------------------------------------	--------------------------------------------------------------------------------------------------------------------------------------------------------------------------------------------------------------------------------------------------------------------------------------------------------------------------------------------------------------------------------------------------------------------------------------------------------------------------------------------------------------------------------------------------------------------------------------------------------------------------------------------------------------------------------------------------------------------------------------------------------------------------------------------------------------------------------------------------------	----------------------------------------------------------------------------------------------------------------------------------------------------------------------------------------------------------------------------------------------

	<p>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제9조의 4(일반공모증자 등)</p> <p>① (생략)</p> <p>②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p>	<p>제9조의 4(일반공모증자 등)</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삭제)</p>	<p>정관 변경안 제9조 ④항 신설로 중복</p>
<p>제15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15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p>⑤ (현행과 동일)</p> <p>⑥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8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10 ①항 반영</p>
<p>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p>⑤ (현행과 동일)</p> <p>⑥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8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10 ①항 적용</p>
<p>제36조의 2(위원회)</p> <p>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감사위원회</p> <p>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제36조의 2(위원회)</p> <p>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감사위원회</p> <p>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이사회내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p>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주형	1959.12.22	-	없음	이사회
김종석	1960.05.20	-	없음	이사회
김상월	1950.03.11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충흔	1957.08.14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윤판	1957.04.1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주형	現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본점 점장(2008~2010) - (주)이마트 경영지원본부 본부장(2011~2013) - (주)이마트 사내이사(2013)	없음
김종석	現 (주)광주신세계 관리이사	- (주)신세계 마산점 지원팀장 (2006) - (주)신세계 충청점 영업팀장 (2010) - (주)신세계 영등포점 지원팀장 (2011)	없음
김상월	現 (주)광주신세계 사외이사	- 서울 구로세무서장(2006) - 서울 중부세무서장 (2008)	없음
유충흔	現 (주)광주신세계 사외이사	- 감사원 전략감사본부장(2007) - 감사원 제2사무차장 (2008) -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09)	없음
윤판	現 도시교통기술연구원장	-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 심의위원(1997)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2011) -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겸임교수 (2012) -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3)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월	1950.03.11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유충흔	1957.08.14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윤판	1957.04.17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상월	現 (주)광주신세계 사외이사	- 서울 구로세무서장(2006) - 서울 중부세무서장 (2008)	없음
유충훈	現 (주)광주신세계 사외이사	- 감사원 전략감사본부장(2007) - 감사원 제2사무차장 (2008) -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09)	없음
윤판	現 도시교통기술연구원장	-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 심의위원 (1997)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2011) -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겸임교수 (2012) -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3)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 (3)	6 (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원	10억원